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창원 의원(찬성자 25명)

나. 의안번호 : 제2576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 8. 10

라. 회부일자 : 2021. 8. 18

## 2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(‘21.6.9)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실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골자

가.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‘총리령’을 ‘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’으로 개정함(안 제15조제1항)

나.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 및

관리하도록 하는 한편,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1항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)의 개정(21.06.09)을 반영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용법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 1]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5조(교육 및 훈련)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<b>총리령</b>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·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15조(교육 및 훈련) ① ----- <b>법 시행규칙</b> 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 <b>성과중심의 보상</b> )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div> ① ~ ③ (생략)	제17조( <b>성과중심의 포상 등</b> ) ① <b>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.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b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### ■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 현황

- 2021.7월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,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5대 4,83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,

- 이들의 금년도 활동실적은 7월말 기준으로 총 9,073회 출동하여 연인원 28,578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204회(연인원 977명)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. ([표 2,3,4] 참조)

[표 2] 2021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

구 분	내 용
운영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직현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 총 195대 4,832명(현원)으로 구성 활동, 정원은 4,860명</li> </ul> </li> <li>○ 출동실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1.7월 총 9,073회, 연인원 28,578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</li> </ul> </li> <li>○ 봉사활동 실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1.7월 총 204회, 연인원 977명 출동하여 봉사활동 전개</li> </ul> </li> </ul>

[표 3] 서울시 의용소방대 소방업무보조 세부실적 현황(2021.7월 기준)

구분	계	화재진압 업무보조	재난발생 대피보조	구조구급 업무보조	화재예방 업무보조	행사지원	안전지원 활동	화재예방 홍보 등
건수	9,073	210	115	17	3,935	98	1,754	2,944
인원	28,578	746	270	92	12,991	182	4,427	9,87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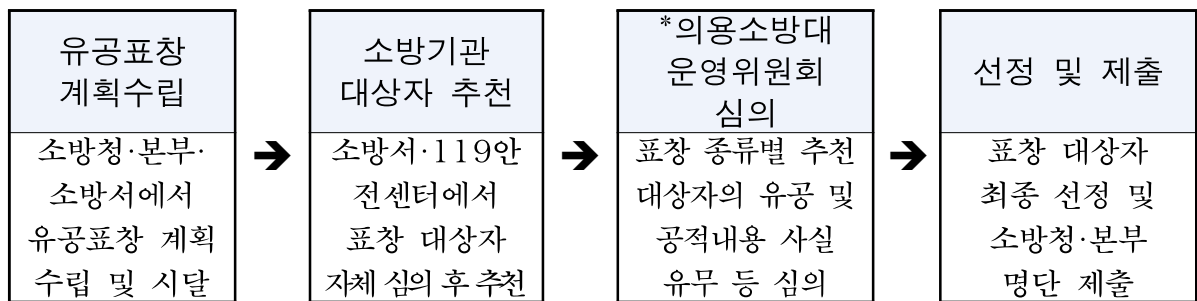
[표 4] 서울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세부실적 현황(2021.7월 기준)

구분	계	농어촌 일손돕기	장애인 시설봉사	예방접종 지원센터	블우이웃 돕기	기타
건수	204	1	1	152	29	21
인원	977	8	22	670	126	151

-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거쳐 활동실적이 탁월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.([표 5], [그림 1] 참조)

[표 5] 서울시 의용소방대 포상현황(2019~2021.7월)

구분	계	대통령	총리	장관	도지사	시장 (광역)	시장 (지자체)	청장	서장	기타
2019	534	1	1	28	0	51	29	24	354	46
2020	576	1	1	32	0	69	2	32	397	42
2021	42	0	0	4	0	2	0	0	32	4



\*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: 본부·소방서에서 구성(외부 위원 포함 5명이상~9명 이하)

[그림 1] 포상대상자 선정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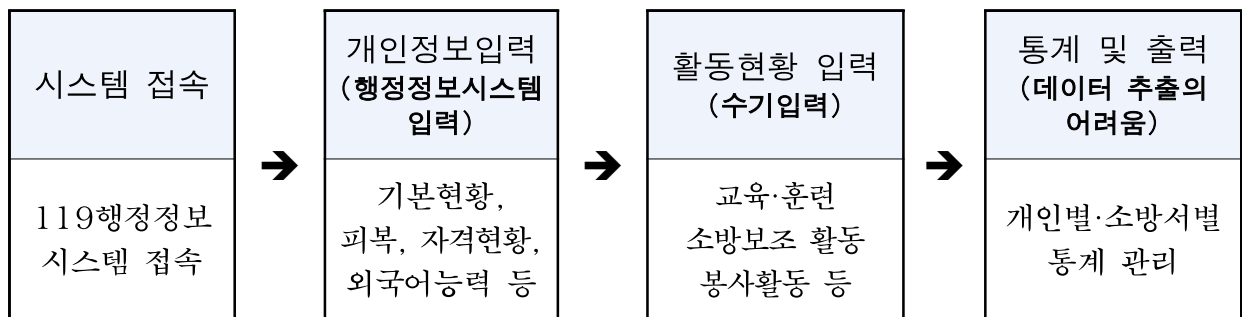
## ■ 개정안에 대한 의견

- 안 제17조제4항의 신설은,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1)의 개정

- 1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,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,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사항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법 시행규칙의 동 조항은 ‘성과중심의 포상 등’을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 전 제1항은 ‘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.’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

- 지난 2021.6.9.일 개정을 통해 이 경우 필요하면 ‘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’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 관련 조문인 제17조에 명문화하려는 것임.
- 그 동안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이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용소방대 인적사항 등의 기본현황만을 입력하고 나머지 교육 및 훈련, 소방보조활동, 봉사활동 등은 소방서 담당이 각 대원의 실적을 소방활동기록부(종이문서)에 수기로 입력하여 통계관리상 연결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 유효 데이터 추출에 어려움이 따르던 상황이었음. ([그림2] 참조)



[그림 2] 의용소방대 관리시스템

- 일례로, 의용소방대원 포상에서 종종 중복적인 포상 사례가 발생해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이 본부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토록 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 사료됨.
- 이외에 안 제15조제1항은,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‘국민안전처’가 ‘행정안전부’에 흡수·통합되면서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이에 따라 ‘총리령(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’이 ‘행정안전부령’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‘총리령’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용 문구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춰 ‘법 시행규칙’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